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급차 위치정보의 실시간 전송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8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구급차 위치정보의 실시간 전송(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제47조 제2항제1호의2·제49조의2 신설 등)	3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8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7.
- (3) 회 부 일 : 2026. 1.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구급차 위치정보의 실시간 전송(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제47조제2항제1호의2·제49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구급차의 운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제47조제2항제1호의2·제4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 11. (생략) ②·③ (생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49조의2에 따른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u> 7.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생략)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신 설>

2. 3. (생략)

③ · ④ (생략)

<신 설>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2.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
간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이하 “구급차위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
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급차위치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제2항에 따른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6. (생략) ④·⑤ (생략) 제60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위치정보 전송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경우</u> 5.·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u>
---	---

나. 검토의견

- 첫째, 개정안은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영을 방지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응급환자 이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의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¹⁾ 중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일정 부분 충족될 여지가 있음.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구급차 출동·처리기록 및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작성·관리, 구급차 운행기록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²⁾ 실시간 전송 의무화 등(시행규칙 안 제40조제4항·제5항, 별표 제16의2 등)

- 둘째, 개정안은 위치정보를 미전송 또는 거짓 전송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60조제4항제5호 신설),

이는 재해 시 응급의료종사 명령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거부, 법적 자격이 없는 자의 구급차 운용, 구급차 명의이용 금지 위반, 법적 용도 외의 구급차 사용 등에 대한 벌칙(현행법 제60조제4항 각 호³⁾)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06호, 2026. 2. 6.

2)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 Ambulance Information Record)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구급차등 운용자가 개정안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제출하지 않거나 조작·위조·변조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8])⁴⁾.

□ 셋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구급차 운용자는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장비를 장착하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구급차 위치정보의 실시간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

- 입법예고('26. 2. 6. ~ 3. 18.) 등을 거쳐 '26년 상반기 개정 예정

4) 근거: 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차량 속도,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에 한정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및
구급차 장착 장비 추가(제4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조항은 기존
법 조항*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정 불필요

* 법 제25조제1항제6호·제9호5), 제47조제2항

벌칙 조항은 다른 사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 (소방청) 법 제44조제1항6)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에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119구급차도 포함되는데, 119구급차
에 대해서는 본 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를 두는 것이 타당

- 119구급차 등 소방자동차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37)에 따라
주행경로 및 위치정보를 포함한 운행기록이 수집·관리되고 있음.

-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7)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응급환자이송업협회) 구급차의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구급차에 개정안 적용 필요
- ☐ (대한병원협회)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기기 설치 및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필요
-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법안 내용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509